



제426회국회(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11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검 토 보 고

〈「행정기본법」에 따라 관련 조문 정비〉
■ 조은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259호)

2025. 7.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총괄적 검토	2
2. 개별법에 대한 검토	8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이의신청 조문정비)	8
(2) 「농어촌도로 정비법」 (인허가의제 조문정비)	14
(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이의신청 조문정비)	18
(4)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이 의신청 및 이행강제금 조문정비)	23
(5) 「온천법」 (인허가의제 조문정비)	36
(6)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인허가의제 조문정비)	47
(7)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인허가의제 및 이의신청 조문정비)	54
(8) 「주민등록법」 (이의신청 조문정비)	65
(9)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인허가의제 조문 정비)	70
(10)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인허가의제 조문정비)	79
(11) 「행정사법」 (이의신청 및 제척기간 조문정비)	8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조은회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5. 2. 18.
3. 회부연월일 : 2025. 2. 1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기본법」과 중복되거나 「행정기본법」보다 국민에게 불리한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제재처분의 제척기간, 인허가의제, 이행강제금 및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행정안전부 소관 개별 법률들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

Ⅲ. 검토의견

1. 총괄적 검토

개정안은 「행정기본법」에 따라 행정안전부 소관의 11개 법률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으로,

「행정기본법」은 행정 분야에 통일적인 법 적용기준을 규정하기 위하여 2021.3.23. 제정·시행되어,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양한 행정 작용의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있음. 그 중 제재처분의 제척기간(제23조), 인허가의제(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행정상강제(제30조부터 제33조까지), 수리 여부에 따른 신고의 효력(제34조),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제36조), 처분의 재심사(제37조) 등 일부 조항은 2023.3.24.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음.¹⁾

개정안은 2023.3.24.부터 시행되어 온 「행정기본법」의 내용 중 제재처분의 제척기간, 인허가의제, 이행강제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등과 관련하여 개별 법률에서 「행정기본법」과 중복되거나 이보다 불리하게 규정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하고, 개별 법률에서 정하지 않는 부분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을 준용함을 명시하는 등 행정법 관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1) 「행정기본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 제29조, 제38조부터 제40조까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 제36조 및 제37조는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주요 개정 사항]

개정 법률 ²⁾	내용 및 순서 등 변경	유사·중복 내용 삭제	신설
인허가의제			
「농어촌도로법」	-	-	-「행정기본법」 준용 명시
「온천법」	-같은 항 내 조문 정비	-인허가 관련 서류 제출 -관계기관과 사전 협의 -관계기관 의견제출 기한 및 미제출 시 협의간주	-「행정기본법」 준용·따름 명시 *정비 대상 : 2건
「접경지역법」	-조문 문구 정비 (협의 → 미리 협의)	-관계기관 의견제출 기한 및 미제출 시 협의간주	-「행정기본법」 준용 명시
「제주특별법」	-조문 문구 정비 (협의 → 미리 협의)	-관계기관 의견 미제출 시 협의간주 -인허가 관련 서류 제출	-「행정기본법」 준용 명시
「미군공여구역법」	-조문 재구성 -조문 순서 변경	-관계기관과 사전 협의 -협의 시 해당 법률 준수 -관계기관 의견제출 기한 및 미제출 시 협의간주	-「행정기본법」 따름 명시
「소도읍법」	-같은 항 내 조문 정비 -조문 문구 정비 (사전에 협의 → 미리 협의)	-관계기관 의견제출 기한 및 미제출 시 협의간주	-「행정기본법」 따름 명시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정보공개법」	-조문 재구성 -시행령 내용 법률로 상향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 가능	-「정보공개법」 ‘청구인의 이의신청’ 준용 명시
「민원처리법」	-조제목 (이의신청→이의신청 특례)	-	-「행정기본법」 따름 명시
「옥외광고물법」	-조제목 (조치→ 조치 등)	-	-「행정기본법」 준용 명시
「제주특별법」	-	-	-「행정기본법」 따름 명시
「주민등록법」	-조 제목 (이의신청→이의신청 특례)	-	-「행정기본법」 따름 명시
「행정사법」	-이의신청 특례 조문 신설 -시행규칙 내용 법률로 상향	-	-
이행강제금			
「옥외광고물법」	-조문 재구성	-의무 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 중지 -이행강제금 미납부시 강 제징수	-「행정기본법」 따름 명시
제재처분의 제척기간			
「행정사법」	-특례 사항 규정 방식 변경	-	-

2) 개정 법률 및 약칭

개정 사항을 주제별로 간략히 살펴 보면,

첫째, ‘**인허가의제**’와 관련하여, 개별 법률에서 인허가의제 신청시 ‘관련 서류 제출’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제출 기한 및 미제출 시 협의 간주’ 등 「행정기본법」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이를 삭제하고 「행정기본법」을 따르거나 준용하도록 명시함.

둘째,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개별 법률에서 이의신청에 관하여 「행정기본법」과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조제목을 ‘이의신청 특례’로 변경하거나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행정기본법」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삭제하고 「행정기본법」을 따르거나 준용하도록 함.

셋째, ‘**이행강제금**’과 관련하여, 개별 법률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행정기본법」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삭제하고 「행정기본법」을 따르도록 함.

마지막으로, ‘**제재처분의 제척기간**’과 관련하여, 개별 법률에서 제척

법률명	약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정보공개법」
「농어촌도로 정비법」	「농어촌도로법」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처리법」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옥외광고물법」
「온천법」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접경지역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주특별법」
「주민등록법」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미군공여구역법」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소도읍법」
「행정사법」	—

기간에 관하여 「행정기본법」과 다르게 규정³⁾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행정기본법」을 적용하되 일정한 경우에는 짧거나 긴 기간을 규정하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음.⁴⁾

개정안은 행정에 관한 법률을 제·개정하는 경우 「행정기본법」의 목적과 원칙, 기준 및 취지에 부합되도록 노력⁵⁾하여야 하는 점을 반영하여 통일적이고 일관적인 행정법 관계를 갖추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입법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임.

3) 「행정기본법」

제23조(제재처분의 제척기간) ① 행정청은 법령등의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재처분(인허가의 정지·취소·철회, 등록 말소, 영업소 폐쇄와 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할 수 없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2. 당사자가 인허가나 신고의 위법성을 알고 있었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행정청의 조사·출입·검사를 기피·방해·거부하여 제척기간이 지난 경우
4. 제재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국민의 안전·생명 또는 환경을 심각하게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행정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심판의 재결이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제재처분이 취소·철회된 경우에는 재결이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합의제행정기관은 2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그 취지에 따른 새로운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

④ 다른 법률에서 제1항 및 제3항의 기간보다 짧거나 긴 기간을 규정하고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현행 「행정사법」은 ‘행정사법인 설립인가 취소’의 제척기간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고, ‘행정사 또는 행정사법인의 영업정지’에 대하여는 3년의 제척기간을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영업정지에 관한 제척기간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행정기본법」상 제척기간에 관한 조항을 적용하는 경우 “5년(업무정지의 경우에는 3년)”으로 한다는 내용의 조문을 신설함.

5) 「행정기본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행정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행정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원칙, 기준 및 취지에 부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개정안 논의시 다음의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첫째, 개정안은 「행정기본법」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개별 법률의 조문을 삭제하고 「행정기본법」을 준용하도록 하는 조문을 신설하고 있는데,

「행정기본법」은 동일한 내용을 이미 규정⁶⁾하고 있으므로 중복되는 측면이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둘째, 인허가 의제의 경우 「행정기본법」은 신청에 따라 인허가가 의제되는 경우를 규정⁷⁾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개별 법률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시행계획 수립 시 의제되는 인허가⁸⁾와 같

6) 「행정기본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행정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행정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원칙, 기준 및 취지에 부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7) 「행정기본법」

제24조(인허가의제의 기준) ① 이 절에서 “인허가의제”란 하나의 인허가(이하 “주된 인허가”라 한다)를 받으면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와 관련된 여러 인허가(이하 “관련 인허가”라 한다)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

② 인허가의제를 받으려면 주된 인허가를 신청할 때 관련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함께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된 인허가 행정청이 별도로 정하는 기한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③ 주된 인허가 행정청은 주된 인허가를 하기 전에 관련 인허가에 관하여 미리 관련 인허가 행정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제3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제5항 단서에 따른 절차에 걸리는 기간은 제외한다)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단에서 정한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는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한 기간을 말한다) 내에 협의 여부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된 것으로 본다.

⑤ (생략)

8) 「소하천 정비법」

제10조의2(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등의 의제) ① 관리청이 제8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여 공고하거나 관리청이 아닌 자가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면허·승인·신고·결정·협의 또는 지정 등(이하 이 조에서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관리청이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8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공고하거나 제10조제5항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 허가를 고시하였을 때에는 해당 인·허가등의 고시·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이 신청과 무관하게 의제되는 인허가를 포함하고 있음. 이 경우에는 현행 「행정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인허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한 측면이 있으므로, 개별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행정기본법」의 인허가 의제 관련 사항들과 연계하기 위해서는 개정안과 같이 「행정기본법」 제24조~제26조(인허가의제의 기준·효과·사후관리 등)를 준용하는 조문이 필요해 보임.⁹⁾

셋째,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경우 2025.3.18. 「행정기본법」이 개정되어 이의신청 결과통지시 행정청이 재송제기기간을 안내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는데,

개정안이 개별법 중 「행정기본법」과 유사·중복되는 조문을 삭제하여 행정법의 체계성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임을 고려할 때, 개별법의 ‘재송제기기간 안내’에 관한 조문을 추가적으로 함께 정비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14조(인·허가등의 의제) ① 사업시행자(제12조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자는 제외한다)가 제1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은 경우 또는 제12조제1호(국가) 및 제2호(지방자치단체)의 사업시행자가 제13조제9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사업승인권자가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지정·승인·협의·신고·결정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3조제6항 및 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9) 개정안은 이의신청 조문정비와 관련하여 ‘「행정기본법」 제○조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인허가의제에 조문정비와 관련하여는 개별법의 인허가가 「행정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허가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행정기본법」 제○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2. 개별법에 대한 검토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10)

개정안은 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공개 결정이 있는 경우 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현재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기관등의 정보공개심의회 개최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이의신청 결과 결정 및 통지 기한, 행정심판·행정소송에 대한 고지 등은 「정보공개법」 제18조의 ‘청구인의 이의신청’ 관련 사항을 준용함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21조).

현행	개정안
제21조(제3자의 비공개 요청 등) ① (생략)	제21조(제3자의 비공개 요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 결정을 할 때에는 공개 결정 이유와 공개 실시일을 분명히 밝혀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제3자는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 ----- ----- -----한 다. 이 경우 공개 결정일과 공개 실시일 사이에는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10) 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함.

현행	개정안
③ 공공기관은 제2항에 따른 공개 결정일과 공개 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신설> <신설>	③ 제2항에 따른 공개 결정에 이의가 있는 제3자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국가기관등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18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정보공개법」 제11조제3항은 공개 청구된 정보가 제3자와 관련된 경우에는 제3자에게 청구 사실을 통지하고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¹¹⁾ 제21조는 자신과 관련 있는 정보의 공개청구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공공기관에 자신과 관련된 정보의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으며,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¹²⁾

1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①·② (생략)

③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⑤ (생략)

1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자의 비공개 요청 등) ① 제11조제3항에 따라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때 제21조 ‘제3자의 이의신청’은 제18조 ‘청구인의 이의신청’¹³⁾과 달리 공공기관이 이의신청의 결과를 결정·통지해야 하는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고, 제3자의 이의신청 사항에 대한 정보공개심의회 개최를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규정¹⁴⁾하는 등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비해 간략하게 규정되어 있음.

② 제1항에 따른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 결정을 할 때에는 공개 결정 이유와 공개 실시일을 분명히 밝혀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제3자는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2항에 따른 공개 결정일과 공개 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1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이의신청)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국가기관등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개최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심의회의 심의를 이미 거친 사항

2. 단순·반복적인 청구

3. 법령에 따라 비밀로 규정된 정보에 대한 청구

③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却下) 또는 기각(棄却)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3항에 따른 결과 통지와 함께 알려야 한다.

1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정보공개심의회)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업무성격이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법 제12조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그 기관 또는 소속 기관에 1개 이상 설치·운영해야 한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은 제외한다.

가.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

나. 청구인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다. 제3자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라. 청구인의 요구대로 공개 결정을 할 경우

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③~⑤ (생략)

개정안은 ‘제3자의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정보공개심의회 개최를 현행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 기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가능 사실 통지 등과 관련하여 제18조의 ‘청구인의 이의신청’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여, ‘제3자의 이의신청’ 규정을 보완하는 효과가 있음.

[현행 및 개정안의 제3자의 비공개 요청 등 조문 비교(안 제21조)]

구분	현행	개정안	비고
제3자의 비공개 요청	-제1항- 자신과 관련 있는 정보의 공개 청구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3일 이내에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음.	-제1항- (현행과 같음)	현행 유지 * 「행정기본법」에 관련 규정 없음.
비공개 요청 거부 및 이의신청, 신청기한 등	-제2항- 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개 결정을 할 때에는 공개 결정 이유와 공개 실시일을 분명히 밝혀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해야 함.	-제2항- (현행과 같음)	현행 유지 * 「행정기본법」에 관련 규정 없음.
	제3자는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이 경우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함. (개정안 제3항으로 이동)	(현행 제3항에서 이동) 공개 결정일과 공개 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함.	현행 유지 (조문 순서 변경)
	-제3항- 제2항에 따른 공개 결정일과 공개 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함. (개정안 제2항으로 이동)	-제3항- (현행 제2항에서 이동하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관련 사항은 삭제) 제2항에 따른 공개 결정에 이의가 있는 제3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은 삭제 이의신청 및 기간은 현행 유지

15)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정보공개심의회) ① 국가기관, 지방자

구분	현행	개정안	비고
정보공개 심의회	<u><신 설></u>	-제4항- 국가기관등은 제3자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를 개최하여야 함.	조문 정비 *제3자의 이의신청에 대해서도 정보공개 심의회를 개최하도록 법률에 명시 -시행령 규정 ¹⁵⁾ 을 법률로 상향
「정보 공개법」 제18조 준용	<u><신 설></u> 「정보공개법」 제18조제3항 및 제4항 - 7일 이내에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 다만,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 통지 -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의신청 결과와 함께 통지	-제5항-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18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함.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제18조의 ‘청구인의 이의신청’ 준용

※ 현행 및 개정안의 음영표시 : 유사 또는 동일한 내용

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업무성격이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법 제12조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그 기관 또는 소속 기관에 1개 이상 설치·운영해야 한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은 제외한다.

가.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

나. 청구인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다. 제3자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라. 청구인의 요구대로 공개 결정을 할 경우

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③~⑤ (생략)

다만, 현행법이 정보공개 청구인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¹⁶⁾하는 것과 달리, 개정안은 제3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문구를 삭제하고 「정보공개법」 제18조의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공공기관이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한 경우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고 있는데,

제3자가 이의신청의 제기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불명확해지는 측면이 있으므로 현행법과 같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제기에 관한 명시적인 문구를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¹⁷⁾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이의신청 절차를 쉽게 이해하도록 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나, 제3자가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 관한 현행 조문의 문구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16) 참고로, 청구인이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 없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규정은 「정보공개법」 제19조 및 제20조에 규정되어 있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9조(행정심판)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 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

② 청구인은 제18조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③ · ④ (생략)

제20조(행정소송)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 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17) 참고로, 이번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조문 정비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제기와 관련된 조항은 별도로 삭제하고 있지 않음.

(2) 「농어촌도로 정비법」 18)

개정안은 농어촌도로의 노선 지정·공고와 관련된 인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인허가 의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2조).

현행	개정안
제12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등의 의제) ①·② (생략) <u><신 설></u>	제12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등의 의제)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개정안의 조문체계를 현행과 비교하면, 제3항을 신설하여 제1항에 따른 인허가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인허가의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18) 이하 “「농어촌도로법」”이라 함.

[현행 및 개정안의 인허가 의제 조문 비교(안 제12조)]

구분	현행	개정안	비고
인허가 의제 제도	-제1항- 농어촌도로의 노선을 지정하고 공고한 경우에는 제1~7호의 인· <u>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봄.</u>	-제1항- (현행과 같음)	현행 유지
관계기관 사전 협의	-제2항- 군수는 <u>도로의 정비공사를 시행</u> 하거나 <u>허가하려는</u> 경우에 제1항 의 인·허가등 의제 사항이 포함 되어 있을 때에는 <u>미리 관계 기</u> <u>관과 협의</u> 해야 함.	-제2항- (현행과 같음)	현행 유지 * 「행정기본법」의 유 사 규정과 다른 사항 포함 - 「행정기본법」은 신청에 따른 인허가 의제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보이나, 「농어촌도로법」은 군수의 노선지정·공 고 등에 따른 인허 가 의제를 규정하고 있음.
관계기관 의견제출 기한 및 미제출시 협의간주	관계 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 은 날부터 <u>20일 이내</u> 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u>제출하지 아니한</u> 경우에 는 <u>협의를 이루어진 것으로 봄.</u>	(현행과 같음)	
「행정 기본법」 준용	<신 설> ※ 「행정기본법」 제24조~제26조(인허가의제의 기준, 효과, 사후관리 등) 중 「농어촌도로법」에 미규정된 주요 사항 - 주된 인허가 신청 시 관련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 함께 제출 -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청은 해당 법률을 위반하여 협의에 응해서는 안됨. - 협의가 된 사항은 주된 인허가를 받았을 때 관련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봄. -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관련 인허가를 직접 한 것으로 보아 관계 법률에 따른 관리·감독 등 필 요한 조치를 해야 함. - 주된 인허가 후 변경 시에도 준용 - 법률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의제의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제3항- 제1항에 따른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 <u>행정기본</u> <u>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u> 준용함.	<u>제1항의 인허가 의제에</u> <u>대하여</u> <u>「행정기본법」을</u> <u>준용함을 명시</u>

「농어촌도로법」 제12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등의 의제)는
군수가 농어촌도로의 노선을 지정·공고한 경우 각 호에 해당하는 허
가·면허·결정·인가·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것으로 보고(제1항), 군수가

도로의 정비공사를 시행하거나 허가하려는 경우에 인허가의제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미리 관계 기관과 협의하도록 하며(제2항 본문), 관계 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해야 하고 기간 내 의견 미제출 시에는 협의를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제2항 단서).¹⁹⁾

개정안은 농어촌도로의 ‘인허가의제’와 관련하여 「행정기본법」을 준용하도록 하는 제3항을 신설함으로써, 주된 인허가 신청 시 관련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고, 관련 인허가의 절차 생략이 가능하며, 협의시 법령 우위의 원칙과 인허가의제의 효과 발생의 시기 및 내용, 사후관리에 관련된 사항을 적용하는 것을 분명히 하는 효과가 있음.²⁰⁾

19)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2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등의 의제) ① 제9조에 따라 도로의 노선을 지정하고 공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면허·결정·인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 7. (생략)

② 군수는 도로의 정비공사를 시행하거나 허가하려는 경우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미리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20) 「행정기본법」

제24조(인허가의제의 기준) ① 이 절에서 “인허가의제”란 하나의 인허가(이하 “주된 인허가”라 한다)를 받으면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와 관련된 여러 인허가(이하 “관련 인허가”라 한다)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

② 인허가의제를 받으려면 주된 인허가를 신청할 때 관련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함께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된 인허가 행정청이 별도로 정하는 기한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③ 주된 인허가 행정청은 주된 인허가를 하기 전에 관련 인허가에 관하여 미리 관련 인허가 행정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제3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제5항 단서에 따른 절차에 걸리는 기간은 제외한다)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단에서 정한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는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한 기간을 말한다) 내에 협의 여부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된 것으로 본다.

⑤ 제3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해당 법령을 위반하여 협의에 응하지는 아니 된다. 다만, 관련 인허가에 필요한 심의, 의견 청취 등 절차에 관하여는 법률에 인허가의제 시에도 해당 절차를 거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거친다.

제25조(인허가의제의 효과) ① 제24조제3항·제4항에 따라 협의가 된 사항에 대해서는 주된 인허

특히 「행정기본법」은 ‘신청’에 의하여 주된 인허가를 받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농어촌도로법」은 신청과 무관하게 군수가 농어촌도로 노선을 지정·공고하는 경우 인허가의제 되는 것을 규정하고 있어 「행정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인지 여부가 불명확한 측면이 있으므로,

개정안은 「행정기본법」의 인허가의제 관련 조문이 적용됨을 명확히 함으로써 법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보임.

가를 받았을 때 관련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인허가의제의 효과는 주된 인허가의 해당 법률에 규정된 관련 인허가에 한정된다.

제26조(인허가의제의 사후관리 등) ① 인허가의제의 경우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관련 인허가를 직접 한 것으로 보아 관계 법령에 따른 관리·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주된 인허가가 있을 후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4조·제25조 및 이 조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이 절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의제의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4조(인허가의제 관련 협의·조정)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주된 인허가(이하 “주된인허가”라 한다) 행정청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협의 과정에서 협의의 신속한 진행이나 이견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관련 인허가(이하 “관련인허가”라 한다) 행정청과 협의·조정을 위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조정을 위한 회의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주된 인허가 행정청이 관련인허가 행정청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5조(인허가의제 행정청 상호 간의 통지) ① 관련인허가 행정청은 법 제24조제5항 단서에 따라 관련인허가에 필요한 심의, 의견 청취 등의 절차(이하 이 조에서 “관련인허가절차”라 한다)를 거쳐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지체 없이 주된인허가 행정청에 통지해야 한다.

1. 관련인허가절차의 내용
2. 관련인허가절차에 걸리는 기간
3. 그 밖에 관련인허가절차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

② 주된인허가 행정청은 법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주된인허가를 하거나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주된인허가가 있을 후 이를 변경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련인허가 행정청에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③ 주된인허가 행정청 또는 관련인허가 행정청은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된인허가 또는 관련인허가의 관리·감독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상호 간에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²¹⁾

개정안은 「민원처리법」이 「행정기본법」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규정과 다르게 규정하고 있음을 명시하기 위하여 조 제목을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로 변경하고,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민원처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는 「행정기본법」 제36조(이의신청)에 따름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35조).

현행	개정안
제35조(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 ④ (생략) <u><신설></u>	제35조(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개정안의 조문체계를 현행과 비교하면, 조 제목을 변경(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하는 외에 제1항~제4항은 현행을 유지하고, 제5항을 신설하여 제1항~제4항 외의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의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21) 이하 “「민원처리법」”이라 함.

[현행 및 개정안의 이의신청 조문 비교(안 제35조)]

구분	현행	개정안	비고
조 제목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행정기본법」의 이의신청과 다른 사항이 있음을 명시
이의신청 제도 및 신청기한	-제1항- 법정민원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불복하는 민원인은 그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제1항- (현행과 같음) ※현행규정이 국민에게 유리	현행 유지 * 「행정기본법」 -행정청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에 이의신청할 수 있음.
결정 및 통지 기한	-제2항- 10일 이내 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인용 여부를 결정하고 민원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해야 함. 다만, 10일의 범위 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통지해야 함.	-제2항- (현행과 같음) ※현행규정이 국민에게 유리	현행 유지 * 「행정기본법」 -14일 이내 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함. 다만, 10일의 범위 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통지해야 함.
행정심판, 행정소송 제기 가능	-제3항-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제3항- (현행과 같음)	현행 유지 * 「행정기본법」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필요사항 대통령령 위임	-제4항-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제4항- (현행과 같음)	현행 유지
「행정기본법」 적용	<신 설> ※ 「행정기본법」 제36조(이의신청) 중 「민원처리법」에 미규정된 주요 사항 - 이의신청 결과 통지 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자는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통지기간 내에 결과를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 가능 -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 통지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2025.9.19. 시행예정) -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제5항-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름.	제1항~제4항의 규정 외에는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름을 명시

「민원처리법」 제35조는 법정민원²²⁾에 대한 거부처분에 불복하는 민원인은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제1항), 행정기관의 장이 10일 이내(10일 범위 내 연장 가능)에 이의신청에 대한 인용 여부를 결정하여 지체없이 통지하도록 하며(제2항), 민원인이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제3항), 이의신청의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제4항).²³⁾

개정안은 「민원처리법」이 「행정기본법」과 동일하거나 보다 유리하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규정을 유지하고(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이의신청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²⁴⁾으로 규정

22)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일반민원

- 1) **법정민원**: 법령·훈령·예규·고시·자치법규 등(이하 “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한 일정 요건에 따라 인가·허가·승인·특허·면허 등을 신청하거나 장부·대장 등에 등록·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

2) ~ 4) (생략)

나. 고충민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고충민원

23)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법정민원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불복하는 민원인은 그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인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인용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민원인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4)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이의신청의 방법 및 처리절차 등) ① 법 제35조에 따른 이의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 4. (생략)

(제4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민원처리법」 제35조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를 따르도록 조문(제5항)을 신설함.

이에 따라 현행 「행정기본법」 상 ① 이의신청에 따른 제소기간의 연장효과²⁵⁾, ②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 통지시 행정심판·행정소송 고지에 관한 사항(2025.9.19. 시행 예정)²⁶⁾, ③ 「행정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²⁷⁾이 「민원처리법」에 따른 거부처

②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제2항 본문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에는 결정 이유, 원래의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이의신청 결정기간의 연장을 통지할 때에는 통지서에 연장 사유 및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상황을 이의신청처리대장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25) 「행정기본법」

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 ③ (생략)

④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자는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제2항에 따른 통지기간 내에 결과를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통지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을 말한다)부터 90일 이내에 제1항의 처분(이의신청 결과 처분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처분으로 한다)에 대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⑤ (이하 생략)

26) 「행정기본법」 (2025.9.19. 시행예정)

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 ③ (생략)

④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자는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제2항에 따른 통지기간 내에 결과를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통지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을 말한다)부터 90일 이내에 제1항의 처분(이의신청 결과 처분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처분으로 한다)에 대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⑤ 행정청은 제2항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항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등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하기 전에 이미 신청인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안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다른 법률에서 이의신청과 이에 준하는 절차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 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생략)

27) 「행정기본법」

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 ⑤ (생략)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생략)

분에 대한 이의신청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명확**하게 할 수 있음.

특히 「행정기본법」은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전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반면 「민원처리법」은 ‘법정민원에 대한 거부처분’에 대하여만 별도로 규정하고 있어 두 법률 간에 지위가 불분명하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된 바 있는데,²⁸⁾

개정안은 「민원처리법」 제35조에 따른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규정이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비하여 우선적으로 적용됨을 규정함으로써, 법정민원 신청이 거부된 국민이 이의신청 제도를 이용함에 있어 혼란을 겪을 가능성을 줄이고 두 법률의 관계를 분명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임.

다만, 개정안은 「행정기본법」과 **중복된 규정**을 삭제하여 행정법 체계를 정비하고자 하는 취지이므로, 「행정기본법」과 동일하게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제35조제3항을 추가적으로 정비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²⁹⁾

28) 손현, 「「행정기본법」 제정·시행에 따른 행정법제 체계 정비방안 연구」, 한구법제연구원, 2024.

29) 참고로, 이번 「주민등록법」 제21조 조문 정비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제기와 관련된 조항은 「행정기본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가. 옥외광고물 관련 이의신청 제도 조문 정비

현행	개정안
제10조(위반 등에 대한 조치) ① ~ ④ (생략) ⑤ 제3항 후단에 따른 요청으로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이 정지되는 이용자는 시장등에게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⑥ ~ ⑨ (생략)	제10조(위반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 ----- ----- . 이 경우 이의 신청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6조를 준용한다. ⑥ ~ ⑨ (현행과 같음)

– 23 –

에게 광고물에 표시된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서비스 이용 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³²⁾

해당 요청으로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이 정지되는 이용자는 이용 정지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용 정지를 요청한 시장등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³³⁾

2. 그 밖에 교통수단의 안전과 이용자의 통행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등

3.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사행산업의 광고물등. 다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 직접 표시·설치하는 광고와 사행산업사업자가 영업장 및 장외발매소의 위치를 표시·안내하기 위하여 영업장 및 장외발매소에 설치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

② 누구든지 광고물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표시(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작을 포함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잔인하게 표현하는 것

2.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3. 청소년의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것

4.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라목부터 바목까지에 따른 사행산업의 광고물로서 사행심을 부추기는 것

5. 인종차별적 또는 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

6.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광고를 금지한 것

3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위반 등에 대한 조치) ① · ② 생략

③ 시장등은 광고물등의 허가·신고에 관한 제3조를 위반하거나 제5조에 해당하는 광고물 중 전화번호 외에는 연락처가 없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라 한다)에게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및 이용기간에 대한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조에 해당하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의 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이하 생략)

33)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위반 등에 대한 조치) ① ~ ④ (생략)

⑤ 제3항 후단에 따른 요청으로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이 정지되는 이용자는 시장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⑥ (이하 생략)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3(전기통신서비스 이용정지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이 정지되는 이용자는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이용정지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용의 정지를 요청한 시장등(법 제3조의2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하려는 사람은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적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등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결정**하고 이의신청의 결과 및 이유 등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에 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15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안은 전기통신서비스 이용 정지요청에 관한 이의신청의 기간·방법·결과 통지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되 「행정기본법」을 준용하도록 하는 조문을 추가함으로써,

이의신청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하위 법령이 「행정기본법」의 기본적인 취지·내용과 부합할 수 있게 하여 체계적·일관적인 행정법 질서를 수립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 취지는 타당함.

[현행 시행령과 행정기본법 상 이의신청 규정 비교]

구분	현행 시행령	행정기본법	비고
이의신청 제도 및 신청기한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이 정지되는 이용자는 이용정지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u>30일 이내</u> 에 시장등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행정청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u>30일 이내</u> 에 이의신청할 수 있음.	동일
결정 및 통지 기한	<u>15일 이내</u> 에 결정하고 이의신청의 결과 및 이유 등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함. 다만, <u>15일의 범위</u> 에서 연장할 수 있음.	<u>14일 이내</u> 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함. 다만, <u>10일의 범위</u> 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통지해야 함.	행정기본법이 유리
행정심판, 행정소송 제기 가능	이의신청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심판 청구 가능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전기통신서비스 이용 정지 요청의 <u>처분성</u> 문제

특히 현행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은 시장등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결정하고 15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³⁴⁾ 「행정기본법」은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34)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3(전기통신서비스 이용정지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이 정지되는 이용자는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이용정지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용의 정지를 요청한 시장등(법 제3조의2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대한 결과를 통지하고 1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연장 사유를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에 따라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이 개정될 경우 이의신청에 관하여 국민에게 보다 유리하게 규정될 것으로 예상됨.

다만, 「행정기본법」의 이의신청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규정한 것으로 이의신청의 대상이 「행정심판법」 제3조에 따른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법」 제19조에 따른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일 것을 전제로 하는데,^{35) 36)}

「옥외광고물법」 상 전기통신서비스 이용 정지요청은 비록 행정청인 시장등이 행하는 행적작용이긴 하나, 법 위반자에 대한 제재라는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법 위반자의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을 정지하도록 지도, 권고, 조언 등을 하는 ‘행정지도’³⁷⁾로서의 외관을 가지고,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하려는 사람은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적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등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결정하고 이의신청의 결과 및 이유 등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에 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15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35) 「행정기본법」

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행정청의 처분(「행정심판법」 제3조에 따라 같은 법에 따른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 (이하 생략)

36)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은 처분에 대하여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기본법」 제36조 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의신청의 대상인 처분은 행정심판 및 항고소송(취소소송)의 대상인 처분으로 한정하여야 할 것임.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전화번호 이용을 정지하는 별도의 행위가 있어야 비로소 구체적인 효과가 발생하며,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시장등의 요청을 이행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고 미이행시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제재조치 등이 예정되어 있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시장등의 요청이 단순한 행정지도로서의 한계를 넘어 규제적 또는 구속적 성격을 갖는다고 보기 어렵고,³⁸⁾

「옥외광고물법」 제10조제5항은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이 정지되는 이용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의신청과 별개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으며,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은 이의신청의 기산점을 ‘이용정지의 통지를 받은 날’로 규정하면서 시장등에게 이의신청을 한 뒤 그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으므로,³⁹⁾

37) 「행정절차법」

제2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2. (생략)
 3. “**행정지도**”란 행정기관이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일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지도, 권고, 조언 등을 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4. (이하 생략)
- 38) 행정지도의 처분성과 관련하여 다음의 판례를 참고할 수 있으며, 단순한 행정지도 내지 권고적 성격을 갖고 있는 경우 처분성을 부정하나, 의무부과 및 제재조치 등이 함께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규제적·구속적 성격을 갖게 되어 처분성을 긍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처분성 부정 : 대법원은 위법 건축물에 대한 단전 및 전화통화 단절조치 요청행위는 **권고적 성격**의 행위에 불과한 것으로서 전기·전화공급자나 특정인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음(대법원 1996. 3. 22. 선고 96누433 판결 등)
 - 처분성 긍정 : 헌법재판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는 행정지도 내지 권고의 외관을 띠고 있지만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에게 조치결과 통지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시정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해당 정보의 취급거부·정지 또는 제한명령이라는 법적 조치가 예정되어 있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게 되는 결과의 발생을 의도하거나 또는 적어도 예상하였다 할 것이므로 단순한 행정지도로서의 한계를 넘어 규제적·구속적 성격을 갖는다고 판시한 바 있음(헌재 2012. 2. 23. 선고 2011헌가13 등).

39)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3(전기통신서비스 이용정지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이 정지되는 이

「옥외광고물법」 제10조제3항 후단에 따른 요청이 행정심판 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⁴⁰⁾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어 「행정기본법」 상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경우 오히려 법 적용에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임.⁴¹⁾

용자는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이용정지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용의 정지를 요청한 시장등(법 제3조의2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③ (생략)

④ 제3항에 따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40) 「행정심판법」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 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행정소송법」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처분등”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하 “處分”이라 한다)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한다.

2.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②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행정청에는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행정기관, 공공단체 및 그 기관 또는 사인이 포함된다.

제3조(행정소송의 종류) 행정소송은 다음의 네가지로 구분한다.

1. 항고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2. 당사자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

3. 민중소송: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

4. 기관소송: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상호간에 있어서의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 이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다만, 헌법재판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되는 소송은 제외한다.

제4조(항고소송) 항고소송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취소소송: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

2. 무효등 확인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

3. 부작위위법확인소송: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

제19조(취소소송의 대상) 취소소송은 처분등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재결취소소송의 경우에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41) 예를 들어,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이 정지되는 이용자는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에 따르면 시장등에게 이의신청을 한 뒤, 이의신청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 이의신청 결과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나, 「행정기본법」에 따르면 이의신청 여부와는 관계없이 전기통신서비스 이용 정지 요청에 대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해석될 수 있음.

참고로, 법제처는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광고의 유지보다는 행정청과의 원활한 협조관계에 대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으므로, 전기통신서비스 이용 정지 요청은 이용자에 대한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 정지에 이르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⁴²⁾

이용이 제한되는 자는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받을 우려가 있다는 점, 시장등이 합동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시·도지사가 직접 전기통신서비스 이용 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는 점⁴³⁾ 등을 이유로 전기통신서비스 이용 정지 요청의 처분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⁴⁴⁾

한편, 개정안에 따라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정지 이의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결정 및 연장 기간이 축소되는 효과가 있는데 이미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정지에 대하여 이의신청 한 자도 유리해진 규정을 적용받

42) 다만,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이용 정지가 시장등과의 자발적인 협조관계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이 이용 정지 요청의 구속력이 있음을 보장하는 것은 아님.

43)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위반 등에 대한 조치) ① · ② (생략)

③ 시장등은 광고물등의 허가·신고에 관한 제3조를 위반하거나 제5조에 해당하는 광고물 중 전화번호 외에는 연락처가 없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라 한다)에게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및 이용기간에 대한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조에 해당하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의 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④ ~ ⑥ (생략)

⑦ 시·도지사는 제3조,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제4조의4, 제5조, 제8조제1항제8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한 광고물등의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제8항 및 제9항에서 같다)과 합동점검을 할 수 있다.

⑧ 시·도지사는 제7항에 따른 합동점검 결과를 시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시장등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조치 등을 취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⑨ 시장등이 제8항에 따른 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도지사는 직접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다.

44) 다만, 시·도지사의 전기통신서비스 이용 정지 요청은 시장등의 이용 정지 요청과 마찬가지로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이행의무나 미이행시 불이익한 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을 수 있음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부칙에 ‘적용례’를 함께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나. 이행강제금 관련 조문 정비

개정안은 「옥외광고물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에 관하여 「행정기본법」 제31조(이행강제금의 부과)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고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행정기본법」을 따르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3).

현행	개정안
제10조의3(이행강제금) ① (생략)	제10조의3(이행강제금)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미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해당 관리자등에게 문서로써 계고(戒告)하여야 한다.	② 시장등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최초의 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③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부과사유·납부기한 및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등을 자세히 밝힌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다.
④ 시장등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최초의 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	<삭제>

현행	개정안
수할 수 있다. ⑤ 시장등은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⑥ 시장등은 제3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삭 제> <삭 제>

개정안은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고, 항을 변경(제4항→제2항으로 이동)하며,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현행 및 개정안의 이행강제금 조문 비교(안 제10조의3)]

구분	현행	개정안	비고
이행 강제금 부과	-제1항- 시장등(제3조의2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후 그 조치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관리자등(입간판·현수막·벽보·전	-제1항- (현행과 같음)	현행 유지 * 「행정기본법」의 취지에 따라 규정 - 부과·징수 주체 - 부과 요건 - 부과 금액

구분	현행	개정안	비고
	단의 관리자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00만원 이하 의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건축법」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로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행 강제금 부과 횟수	-제4항- 시장등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최초의 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음.	-제2항- (현행과 같음)	현행 유지 * 「행정기본법」의 취지에 따라 규정 - 연간 부과 횟수의 상한
계고	-제2항-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미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해당 관리자등에게 문서로써 계고(戒告)하여야 함.)	<삭 제> - 「행정기본법」의 유사 규정 준용 「행정기본법」 제31조제3항 - 행정청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미리 의무자에게 적절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뜻을 문서로 계고(戒告)하여야 한다.	「행정기본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현행 규정 삭제
부과 방법	-제3항-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부과사유·납부기한 및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등을 자세히 밝힌 문서로써 하여야 함)	<삭 제> - 「행정기본법」의 유사 규정 준용 「행정기본법」 제31조제4항 - 행정청은 의무자가 제3항에 따른 계고에서 정한 기한까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강제금의 부과 금액·사유·시기를 문서로 명확하게 적어 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행정기본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현행 규정 삭제

구분	현행	개정안	비고
의무 이행시 부과 가능성	-제5항- (시장등은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함)	<삭 제> - 「행정기본법」의 유사 규정 준용 「행정기본법」 제31조제5항 단서 - 다만,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행정기본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현행 규정 삭제
강제징수	-제6항- 시장등은 제3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삭 제> - 「행정기본법」의 유사 규정 준용 「행정기본법」 제31조제6항 - 행정청은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행정기본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현행 규정 삭제
「행정 기본법」 준용	<신 설>	-제3항-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다.	「옥외광고물법」에 규정되지 않은 이행강제금 관련 사항은 「행정기본법」을 따름을 명시
※ 「행정기본법」 제31조 중 「옥외광고물법」에 미규정된 주요 사항 - 이행강제금 부과 금액의 가중·감경 - 계고 - 통지 내용 : 부과 금액·사유·시기 - 의무 이행시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 중지 및 기 부과 이행강제금 징수 - 이행강제금 미납시 강제징수 절차			

※ 현행 및 개정안의 음영표시 : 유사 또는 동일한 내용

「옥외광고물법」 제10조의3은 시장등은 관리자등이 광고물등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을 받은 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제

1항),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문서로써 계고하도록 하며(제2항), 이행강제금의 부과 방법(제3항)과 이행강제금의 횟수의 상한(제4항), 의무이행시 부과 중지(제5항), 강제징수 절차(제6항)를 정하고 있음.⁴⁵⁾

개정안은 「옥외광고물법」에서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제2항 및 제3항과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삭제하고,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이행강제금에 관한 규정을 따르도록 하여,

「옥외광고물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도 「행정기본법」의 이행강제금 규정이 적용됨을 명시적으로 알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45)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이행강제금) ① 시장등(제3조의2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후 그 조치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관리자등(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의 관리자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건축법」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로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미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해당 관리자등에게 문서로써 계고(戒告)하여야 한다.

③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부과사유·납부기한 및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등을 자세히 밝힌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④ 시장등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최초의 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⑤ 시장등은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⑥ 시장등은 제3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5) 「온천법」

가. 온천개발계획 승인·수립 관련 인허가의제 조문 정비

개정안은 온천개발계획의 승인 또는 수립에 따른 인허가등 의제 규정과 관련하여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고 일부 자구를 수정하며, 「행정기본법」에 규정된 인허가의제의 기준, 효과, 사후관리 등 규정을 준용함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현행	개정안
제10조의2(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등 의제) ①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 제10조에 따른 개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개발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수립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신고·결정·승인·지정·인가·면허·협의·해제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5항에 따라 온천원보호지구 지정이 고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라 요구되는 고시가 된 것으로 본다.	제10조의2(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등 의제) ① 제10조----- ----- ----- ----- ----- ----- ----- ----- ----- ----- ----- ----- ----- ----- ----- ----- <u>경우 다음 각 호의 허가·신고·결정·승인·지정·인가·면허·협의·해제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시·도지사가 인·허가등의 관계 행정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허가등-----</u> ----- -----
1. ~ 29. (생략)	1. ~ 29. (현행과 같음)

개정안은 「행정기본법」과 유사하게 조문을 정비(제1항)하거나 항을 변경(제3항 전단→제2항으로 이동)하고,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내용인 제2항과 제3항 후단은 삭제하며, 제3항을 신설하여 인허가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현행 및 개정안의 인허가 의제 조문 비교(안 제10조의2)]

구분	현행	개정안	비고
인허가 의제 제도	-제1항-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 온천개발계획의 승인(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또는 수립(변경수립)한 경우 제1~29호의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봄.	-제1항- 온천개발계획의 승인(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또는 수립(변경수립)한 경우, 제1~29호의 인허가등에 대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봄.	현행 유지 * 「행정기본법」과 유사하게 조문 정비 - 협의가 된 사항에 대해서는 주된 인허가를 받았을 때 관련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봄.
고시 간주	온천원보호지구 지정이 고시되는 경우 제1~29호의 법률에 따른 고시가 된 것으로 봄.	(현행과 같음)	현행 유지 * 「행정기본법」에 관련 규정 없음.
관련 서류 제출	-제2항-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함.)	<삭 제> - 「행정기본법」의 유사 규정 준용 「행정기본법」 제24조제2항 - 인허가의제를 받으려면 주된 인허가를 신청할 때 관련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행정기본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현행 규정 삭제
관계기관 사전 협의	-제3항- (전단) 시·도지사가 제1항 각 호의 인허가등 의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개발계획을 승인(변경승인)하거나 특별자치시·도지사가 개발계획을 수립(변경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함.	-제2항- (현행과 같음)	현행 유지 * 「행정기본법」의 규정과 다른 사항 포함 - 「온천법」은 특별자치시·도지사의 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인허가 의제도 포함

구분	현행	개정안	비고
관계기관 의견제출 기한 및 미제출시 협약간주	(후단)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u>30일 이내</u> 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봄.)	<삭 제> - 「행정기본법」의 유사 규정 준용 → 「행정기본법」에 따라 협의 기간을 <u>20일 이내</u>로 단축 「행정기본법」 제24조제4항 -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제3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u>20일 이내</u>(제5항 단서에 따른 절차에 걸리는 기간은 제외한다)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단에서 정한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는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한 기간을 말한다) 내에 협의 여부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약이 된 것으로 본다.	「행정기본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현행 규정 삭제 *기간 단축 (30일 이내 → 20일 이내)
「행정 기본법」 준용	<신 설>	-제3항-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함.	「온천법」에 규정되지 않은 인허가 관련 사항은 「행정기본법」을 준용함을 명시
	※ 「행정기본법」 제24조~제26조(인허가의제의 기준, 효과, 사후관리 등) 중 「온천법」에 미규정된 주요 사항 - 주된 인허가 신청 시 관련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 함께 제출 -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청은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해야 하며, 기간 내에 의견 미제출 시에는 협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 -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청은 해당 법률을 위반하여 협의에 응해서는 안됨. -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관련 인허가를 직접 한 것으로 보아 관계 법률에 따른 관리·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주된 인허가 후 변경 시에도 준용 - 법률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의제의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현행 및 개정안의 음영표시 : 유사 또는 동일한 내용

「온천법」 제10조의2는 온천개발계획이 (변경)승인 또는 (변경)수립된 경우 각 호에 해당하는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도록 규정하

고(제1항), 의제되는 인허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며(제2항), 인허가의제 사항이 포함되는 온천개발계획을 (변경)승인하거나 (변경)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고(제3항 전단), 협의 요청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 제출 의무와 의견 미제출시 협의간주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제3항 후단).⁴⁶⁾

개정안은 「온천법」에서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제2항 및 제3항 후단의 규정을 삭제하고,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인허가의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여,

협의 요청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 제출 기한을 기존 ‘3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단축하여 온천개발계획의 (변경)승인 또는 (변경)수립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의 발급이 유리하게 되는 측면이 있음.

특히 「행정기본법」은 ‘신청’에 의하여 주된 인허가를 받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온천법」은 신청과 무관하게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가 온천개발계획을 (변경)승인 또는 (변경)수립

46) 「온천법」

제10조의2(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등 의제) ①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 제10조에 따른 개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수립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신고·결정·승인·지정·인가·면허·협의·해제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5항에 따라 온천원보호지구 지정이 고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라 요구되는 고시가 된 것으로 본다.

1. ~ 29. (생략)

②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개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할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④ ~ ⑥ (생략)

하는 경우 인허가의제되는 것을 규정하고 있어 「행정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인지 여부가 불명확한 측면이 있으므로,

개정안은 「행정기본법」의 인허가 의제 관련 조문이 「온천법」에 적용됨을 명확히 함으로써 법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보임.

나. 온천이용허가 시 인허가의제 조문 정비

개정안은 온천이용허가 시 인허가등 의제 규정과 관련하여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고 일부 자구를 수정하며, 「행정기본법」에 규정된 인허가의제의 기준, 효과, 사후관리 등 규정을 따름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현행	개정안
제16조의2(온천이용허가 시 인·허가등 의제) ①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 제16조에 따른 온천의 이용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 4.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온천이용을 허가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제16조의2(온천이용허가 시 인·허가등 의제) ① 제16조에 따른 온천의 이용허가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인·허가등에 관하여 시장·군수가 인·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 4. (현행과 같음) <삭제>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다.

현행	개정안
<u>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u> ④ (생략)	② (현행 제4항과 같음) 부칙 제2조(「온천법」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를 위한 행정청 간 협의 기간에 관한 사항은 이 법 시행 이후 인·허가등의 의제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개정안은 「행정기본법」과 유사하게 조문을 정비(제1항)하거나 항목을 변경(제4항→제2항으로 이동)하고,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내용인 제2항과 제3항은 삭제하며, 제3항을 신설하여 인허가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따르도록 하고 있음.

[현행 및 개정안의 인허가 의제 조문 비교(안 제16조의2)]

구분	현행	개정안	비고
인허가 의제 제도	-제1항-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 제16조의 온천이용허가를 받은 경우, 제1~4호의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봄.	-제1항- 제16조의 온천이용허가를 받은 경우, 제1~4호의 인허가등에 대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봄.	현행 유지 * 「행정기본법」과 유사하게 조문 정비 - 협의가 된 사항에 대해서는 주된 인허가를 받았을 때 관련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봄.
관련 서류 제출	-제2항- (온천이용허가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함.)	<삭 제> - 「행정기본법」의 유사 규정 적용 「행정기본법」 제24조제2항 - 인허가의제를 받으려면 주된 인허가를 신청할 때 관련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행정기본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현행 규정 삭제
관계기관 사전 협의	-제3항- (전단) (시장·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인허가등 의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온천이용을 허가할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함.)	<삭 제> - 「행정기본법」의 유사 규정 적용 「행정기본법」 제24조제3항 - 주된 인허가 행정청은 주된 인허가를 하기 전에 관련 인허가에 관하여 미리 관련 인허가 행정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관계기관 의견제출 기한 및 미제출시 협의간주	(후단)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봄.)	<삭 제> - 「행정기본법」의 유사 규정 적용 → 「행정기본법」에 따라 협의기간을 20일 이내로 단축 「행정기본법」 제24조제4항 -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제3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제5항 단서에 따른 절차에 걸리는 기간은 제외한다)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단에서 정한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는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한 기간을 말한다) 내에 협의 여부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 간주	「행정기본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현행 규정 삭제

구분	현행	개정안	비고
「행정 기본법」 적용	(제3항 개정)	-제3항-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 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름.	「온천법」에 규정되지 않은 인허가 관련 사항은 「행정기본법」에 따름을 명시
	※ 「행정기본법」 제24조~제26조(인허가의제의 기준, 효과, 사후관리 등) 중 「온천법」에 미규정된 주요 사항 - 주된 인허가 신청 시 관련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 함께 제출 - 주된 인허가 행정청은 주된 인허가 전에 미리 관련 인허가 행정청과 협의 -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청은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해야 하며, 기간 내에 의견 미제출 시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 -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청은 해당 법률을 위반하여 협의에 응해서는 안됨. -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관련 인허가를 직접 한 것으로 보아 관계 법률에 따른 관리·감독 등 필요 한 조치를 해야 함. - 주된 인허가 후 변경 시에도 준용 - 법률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의제의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관련 인허가의 고사공고 간주	-제4항- 제1항에 따라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 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된 것으로 봄.	-제2항으로 이동- (현행과 같음)	현행 유지 (조문 순서 변경) * 「행정기본법」에 관련 규정 없음.

※ 현행 및 개정안의 음영표시 : 유사 또는 동일한 내용

「온천법」 제16조의2는 온천이용허가를 받은 경우 각 호에 해당하는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도록 규정하고(제1항), 의제되는 인허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며(제2항), 인허가의제 사항이 포함되는 온천이용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고(제3항 전단), 협의 요청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 제출 의무와 의견 미제출시 협의간주에 관하여 규정하며(제3항 후단), 인허가등 의제시 해당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된 것으로 보도록(제4항) 하고 있음.⁴⁷⁾

개정안은 「온천법」에서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제2항 및 제3항을 삭제하고,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인허가의제에 관한 규정을 따르도록 하여,

협의 요청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 제출 기한을 기존 ‘3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단축하여 온천이용허가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의 발급이 유리하게 되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임.

47) 「온천법」

제16조의2(온천이용허가 시 인·허가등 의제) ①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 제16조에 따른 온천의 이용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 5.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온천이용을 허가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라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된 것으로 본다.

(6)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⁴⁸⁾

개정안은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승인을 받거나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한 경우 인허가등 의제되는 규정과 관련하여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고, 「행정기본법」에 규정된 인허가 의제의 기준, 효과, 사후관리 등 규정을 준용함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4조).

현행	개정안
제14조(인·허가등의 의제) ① 사업시행자(제12조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자는 제외한다)가 제1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은 경우 또는 제12조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시행자가 제13조제9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사업승인권자가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u>협의를 한 사항에 대하여</u>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지정·승인·협의·신고·결정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3조제6항 및 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의 고시가 있을 때에는	제14조(인·허가등의 의제) ① --- ----- ----- ----- ----- ----- ----- ----- <u>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u> ----- ----- ----- ----- -----

48) 이하 “「접경지역법」”이라 함.

현행	개정안
다음 각 호의 범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 34. (생략) ②·③ (생략) ④ 제3항에 따라 사업승인권자로 부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기간 이내에 의견 제출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 -. 1. ~ 34.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개정안은 「행정기본법」과 유사하게 조문을 정비(제1항)하고,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며 인허가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제4항).

[현행 및 개정안의 인허가 의제 조문 비교(안 제14조)]

구분	현행	개정안	비고
인허가 의제 제도	-제1항- 국가나 지자체가 아닌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의 승인(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사업승인권자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u>협의한 사항에 대하여</u> 제1~34호의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봄.	-제1항- 국가나 지자체가 아닌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의 승인(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사업승인권자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u>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u> 제1~34호의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봄.	조문 정비 * 「행정기본법」 -주된 인허가 행정청은 주된 인허가를 하기 전에 관련 인허가에 관하여 미리 관련 인허가 행정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관련 인허가의 고사공고 간주	사업시행계획의 고시가 있을 때에는 제1~34호의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봄.	(현행과 같음)	현행 유지 * 「행정기본법」에 관련 규정 없음.
관련 서류 제출	-제2항-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사업시행계획의 승인(변경승인 포함)을 신청하거나 <u>사업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사업승인권자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u> 해당 법률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함.	-제2항- (현행과 같음)	현행 유지 -사업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해 사업승인권자에게 협의를 요청하고, 사업승인권자가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일 때에 해당 → 국가 또는 지자체의 사업시행계획 수립에 따른 인허가 의제도 포함
관계기관 사전 협의	-제3항- 사업승인권자는 사업시행계획을 승인(변경승인)하거나 <u>협의를 요청받은 사업시행계획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려는 경우</u> 그 사업시행계획에 제1항 인허가등 의제 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함.	-제3항- (현행과 같음)	

구분	현행	개정안	비고
관계기관 의견제출 기한 및 미제출시 협의간주	-제4항- (사업승인권자로부터 협의를 요청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기간 이내에 의견 제출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봄.)	<삭 제> - 「행정기본법」의 유사 규정 준용 「행정기본법」 제24조제4항 -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제3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제5항 단서에 따른 절차에 걸리는 기간은 제외한다)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단에서 정한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는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한 기간을 말한다) 내에 협의 여부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된 것으로 본다.	「행정기본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현행 규정 삭제
「행정 기본법」 준용	(제4항 개정)	-제4항-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함.	「접경지역법」에 규정되지 않은 인허가 관련 사항은 「행정기본법」을 준용함을 명시
※ 「행정기본법」 제24조~제26조(인허가의제의 기준, 효과, 사후관리 등) 중 「접경지역법」에 미규정된 주요 사항 -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청은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해야 하며, 기간 내에 의견 미제출 시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 -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청은 해당 법률을 위반하여 협의에 응해서는 안되며, 관련 인허가에 필요한 절차는 명시적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거침. - 협의가 된 사항은 주된 인허가를 받았을 때 관련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봄. -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관련 인허가를 직접 한 것으로 보아 관계 법률에 따른 관리·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주된 인허가 후 변경 시에도 준용 - 법률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의제의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접경지역법」 제14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사업시행자가 사업승인권자의 (변경)승인을 받거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

의한 사항에 대하여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고, 사업시행계획 고시가
있을 때에 인허가등의 고시·공고가 있는 것으로 보도록 하며(제1항), 인
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 사업승인권자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
우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제2항), 인허가의제 사항이 포함
되는 사업시행계획을 (변경)승인하거나 의견을 제시하려는 경우 관계 행
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도록 규정하며(제3항), 협의 요청시 관계 행
정기관의 장의 의견 제출 의무와 의견 미제출시 협의간주에 관하여 규
정하고 있음(제4항).⁴⁹⁾

개정안은 「접경지역법」의 인허가의제시 사전협의를 관한 규정을
「행정기본법」과 유사하게 조문을 정비하고, 「행정기본법」과 중복되
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제4항을 삭제하며,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인허가의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여,

관련 인허가의 절차 생략이 가능하고, 협의시 법령 우위의 원칙과 인

49)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14조(인·허가등의 의제) ① 사업시행자(제12조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자는 제외한다)가 제1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은 경우 또는 제12조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시행자가 제13조제9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사업승인권자가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지정·승인·협의·신고·결정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3조제6항 및 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의 고시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을 것으로 본다.

1. ~ 34.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사업시행계획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신청하거나 사업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사업승인권자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업승인권자는 제1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을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하거나 제13조제9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사업시행계획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려는 경우 그 사업시행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사업승인권자로부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기간 이내에 의견 제출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허가의제의 효과 발생의 시기 및 내용, 사후관리에 관련된 사항 등이 적용됨을 분명히 하는 효과가 있음.⁵⁰⁾

- 50) 「행정기본법」 제24조(인허가의제의 기준) ① 이 절에서 “인허가의제”란 하나의 인허가(이하 “주된 인허가”라 한다)를 받으면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와 관련된 여러 인허가(이하 “관련 인허가”라 한다)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
- ② 인허가의제를 받으려면 주된 인허가를 신청할 때 관련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함께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된 인허가 행정청이 별도로 정하는 기한까지 제출할 수 있다.
- ③ 주된 인허가 행정청은 주된 인허가를 하기 전에 관련 인허가에 관하여 미리 관련 인허가 행정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④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제3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제5항 단서에 따른 절차에 걸리는 기간은 제외한다)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단에서 정한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는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한 기간을 말한다) 내에 협의 여부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된 것으로 본다.
- ⑤ 제3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해당 법령을 위반하여 협의에 응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련 인허가에 필요한 심의, 의견 청취 등 절차에 관하여는 법률에 인허가의제 시에도 해당 절차를 거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거친다.
- 제25조(인허가의제의 효과) ① 제24조제3항·제4항에 따라 협이가 된 사항에 대해서는 주된 인허가를 받았을 때 관련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② 인허가의제의 효과는 주된 인허가의 해당 법률에 규정된 관련 인허가에 한정된다.
- 제26조(인허가의제의 사후관리 등) ① 인허가의제의 경우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관련 인허가를 직접 한 것으로 보아 관계 법령에 따른 관리·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주된 인허가가 있는 후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4조·제25조 및 이 조 제1항을 준용한다.
- ③ 이 절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의제의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행정기본법 시행령」

- 제4조(인허가의제 관련 협의·조정)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주된 인허가(이하 “주된인허가”라 한다) 행정청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협의 과정에서 협의의 신속한 진행이나 이견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관련 인허가(이하 “관련인허가”라 한다) 행정청과 협의·조정을 위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조정을 위한 회의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주된 인허가 행정청이 관련인허가 행정청과 협의하여 정한다.
- 제5조(인허가의제 행정청 상호 간의 통지) ① 관련인허가 행정청은 법 제24조제5항 단서에 따라 관련인허가에 필요한 심의, 의견 청취 등의 절차(이하 이 조에서 “관련인허가절차”라 한다)를 거쳐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지체 없이 주된인허가 행정청에 통지해야 한다.
1. 관련인허가절차의 내용
 2. 관련인허가절차에 걸리는 기간
 3. 그 밖에 관련인허가절차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
- ② 주된인허가 행정청은 법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주된인허가를 하거나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주된인허가가 있는 후 이를 변경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련인허가 행정청에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 ③ 주된인허가 행정청 또는 관련인허가 행정청은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된인허가 또는 관련인허가의 관리·감독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상호 간에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특히 「행정기본법」은 ‘신청’에 의하여 주된 인허가를 받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접경지역법」은 신청과 무관하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하는 경우 인허가의제되는 것을 규정하고 있어 「행정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인지 여부가 불명확한 측면이 있으므로,

개정안은 「행정기본법」의 인허가 의제 관련 조문이 「접경지역법」에도 적용됨을 명확히 함으로써 법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임.

(7)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51)

가. 개발사업 시행승인 등 관련 인허가의제 조문 정비

개정안은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받거나 의견을 들은 경우에는 인허가등 의제되는 규정과 관련하여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고, 「행정기본법」에 규정된 인허가 의제의 기준, 효과, 사후관리 등 규정을 준용함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48조).

현행	개정안
제148조(인·허가 등의 의제) ①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제147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거나 의견을 들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지정·승인·협의·신고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47조제13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고시가 있으면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고시·공고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1. ~ 36. (생략) ② (생략)	제148조(인·허가 등의 의제) ① ----- ----- ----- ----- ----- ----- 한다)에 관하여 도지사가 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등----- -----. 1. ~ 3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51) 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함.

현행	개정안
③ 제2항에 따라 도지사로부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체적인 사유가 명시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 제출이 없으면 협의한 것으로 본다.	③ ----- ----- ----- ----- 한다.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에 따른 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신청을 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개정안은 「행정기본법」과 유사하게 조문을 정비(제1항)하고,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내용인 제3항의 일부 및 제5항의 내용을 삭제하며, 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제5항).

[현행 및 개정안의 인허가 의제 조문 비교(안 제148조)]

구분	현행	개정안	비고
인허가 의제 제도	-제1항-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제 147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거나 의견을 들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지정·승인·협의·신고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봄.	-제1항- ‘<u>도지사가 허가등의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정한 사항에</u> 대해서는’ 해당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봄.	조문 정비 * 「행정기본법」 -주된 인허가 행정청은 주된 인허가를 하기 전에 관련 인허가에 관하여 미리 관련 인허가 행정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관련 인허가의 고시·공고 간주	제147조제13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고시가 있으면 관계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고시·공고 등이 있는 것으로 봄.	(현행과 같음)	현행 유지 * 「행정기본법」에 관련 규정 없음.
관계기관 사전 협의	-제2항- 도지사가 제147조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하거나 의견을 제시하려는 경우 그 사업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	-제2항- (현행과 같음)	
관계기관 의견제출 기한	-제3항- 제2항에 따라 도지사로부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체적인 사유가 명시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함.	-제3항- (현행과 같음)	현행 유지 * 「행정기본법」과 다르게 규정. - 행정기본법 : 20일 이내
미제출시 협의간주	(그 기간 내에 의견 제출이 없으면 협의한 것으로 본다.)	<삭 제> - 「행정기본법」의 유사 규정 준용	「행정기본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현행 규정 삭제
		「행정기본법」 제24조제4항 -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제3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제5항 단서에 따른 절차에 걸리는 기간은 제외한다)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단에서 정한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는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한 기간을 말한다) 내에 협의 여부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된 것으로 본다.	

구분	현행	개정안	비고
심의회	-제4항-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내용에 각종 위원회의 심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그 결과에 따라 협의를 하여야 함.	-제4항- (현행과 같음)	현행 유지 * 「행정기본법」에 관련 규정 없음.
서류 제출	-제5항- (제1항에 따른 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신청을 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삭 제> - 「행정기본법」의 유사 규정 준용 「행정기본법」 제24조제2항 - 인허가의제를 받으려면 주된 인허가를 신청할 때 관련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함께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된 인허가 행정청이 별도로 정하는 기한까지 제출할 수 있다.	「행정기본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현행 규정 삭제
「행정기본법」 준용	(제4항 개정)	-제4항-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함.	「제주특별법」에 규정되지 않은 인허가 관련 사항은 「행정기본법」을 준용함을 명시
※ 「행정기본법」 제24조~제26조(인허가의제의 기준, 효과, 사후관리 등) 중 「제주특별법」에 미규정된 주요 사항 -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청은 해당 법률을 위반하여 협의에 응해서는 안됨. - 협의가 된 사항은 주된 인허가를 받았을 때 관련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봄. -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관련 인허가를 직접 한 것으로 보아 관계 법률에 따른 관리·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주된 인허가 후 변경 시에도 준용 - 법률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의제의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제주특별법」 제148조는 개발사업 시행자가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거나 의견을 들은 경우에는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고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고시가 있으면 허가등의 고시·공고 등이 있는 것으로 보고(제1항), 도지사가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하거나 의견을 제시하려는

경우 관계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도록 하며(제2항), 관계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고 의견 미 제출시 협의로 간주하고(제3항), 협의내용에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심의의 결과에 따라 협의하도록 하며(제4항), 허가등 의제시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제5항).⁵²⁾

개정안은 허가등 의제에 관련하여 「행정기본법」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관련 인허가의 절차 생략이 가능하며, 협의시 법령 우위의 원칙과 인허가의제의 효과 발생의 시기 및 내용, 사후관리에 관련된 사항을 적용하는 것을 분명히 하는 효과가 있음.⁵³⁾

5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8조(인·허가 등의 의제) ①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제147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거나 의견을 들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지정·승인·협의·신고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47조제13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고시가 있으면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고시·공고 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1. ~ 36. (생략)

② 도지사가 제147조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하거나 의견을 제시하려는 경우 그 사업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도지사로부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체적인 사유가 명시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 제출이 없으면 협의한 것으로 본다.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내용에 각종 위원회의 심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그 결과에 따라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신청을 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53) 「행정기본법」

제24조(인허가의제의 기준) ① 이 절에서 “인허가의제”란 하나의 인허가(이하 “주된 인허가”라 한다)를 받으면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와 관련된 여러 인허가(이하 “관련 인허가”라 한다)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

② 인허가의제를 받으려면 주된 인허가를 신청할 때 관련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함께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된 인허가 행정청이 별도로 정하는 기한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③ 주된 인허가 행정청은 주된 인허가를 하기 전에 관련 인허가에 관하여 미리 관련 인허가 행정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제3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제5항 단서에 따른 절차에 걸리는 기간은 제외한다)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단에서 정한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는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한 기간을 말한다) 내에 협의 여부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된 것으로 본다.

특히 「행정기본법」은 ‘신청’에 의하여 주된 인허가를 받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제주특별법」은 신청과 무관하게 국가나 개발센터가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지사의 의견을 듣는 경우에도 인허가의제되는 것을 규정하고 있어 「행정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인지 여부가 불명확한 측면이 있으므로,

개정안은 「행정기본법」의 인허가 의제 관련 조문이 적용됨을 명확히 함으로써 법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보임.

다만, 개정안은 「행정기본법」보다 불리하게 규정하고 있는 규정을

⑤ 제3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해당 법령을 위반하여 협의에 응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련 인허가에 필요한 심의, 의견 청취 등 절차에 관하여는 법률에 인허가의제 시에도 해당 절차를 거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거친다.

제25조(인허가의제의 효과) ① 제24조제3항·제4항에 따라 협의를 거친 사항에 대해서는 주된 인허가를 받았을 때 관련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인허가의제의 효과는 주된 인허가의 해당 법률에 규정된 관련 인허가에 한정된다.

제26조(인허가의제의 사후관리 등) ① 인허가의제의 경우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관련 인허가를 직접 한 것으로 보아 관계 법령에 따른 관리·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주된 인허가가 있는 후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4조·제25조 및 이 조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이 절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의제의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4조(인허가의제 관련 협의·조정)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주된 인허가(이하 “주된인허가”라 한다) 행정청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협의 과정에서 협의의 신속한 진행이나 이견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관련 인허가(이하 “관련인허가”라 한다) 행정청과 협의·조정을 위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조정을 위한 회의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주된 인허가 행정청이 관련인허가 행정청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5조(인허가의제 행정청 상호 간의 통지) ① 관련인허가 행정청은 법 제24조제5항 단서에 따라 관련인허가에 필요한 심의, 의견 청취 등의 절차(이하 이 조에서 “관련인허가절차”라 한다)를 거쳐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지체 없이 주된인허가 행정청에 통지해야 한다.

1. 관련인허가절차의 내용

2. 관련인허가절차에 걸리는 기간

3. 그 밖에 관련인허가절차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

② 주된인허가 행정청은 법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주된인허가를 하거나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주된인허가가 있는 후 이를 변경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련인허가 행정청에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③ 주된인허가 행정청 또는 관련인허가 행정청은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된인허가 또는 관련인허가의 관리·감독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상호 간에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삭제하고 행정법 적용관계를 명확하게 하려는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제3항에서 관계기관의 의견제출 기한을 ‘30일 이내’로 규정하면서도 의견 미제출시 협의간주에 관한 부분을 삭제하고 있는데,

「행정기본법」 제24조제4항은 전단에서 의견제출 기한을 ‘20일 이내’로 규정하고 후단에서는 ‘전단의’ 기간 내에 의견 미제출시 협의간주를 규정하고 있어, 후단의 협의간주에 관한 부분이 「제주특별법」에도 준용되는지 법 해석상의 혼란이 발생하게 될 여지가 있으므로 추후 자구 수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⁵⁴⁾

54) 참고로, 이번 「온천법」, 「접경지역법」, 「미군공여구역법」, 「소도읍법」 조문 정비시, 관련기관 의견제출 기한 및 미제출 시 협의간주에 관한 규정은 함께 삭제하고 있음.

나. 지하수 취수량 제한 등 관련 이의신청 제도 조문 정비

개정안은 도지사의 지하수 취수량 제한에 대한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도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행정기본법」 제36조(이의신청)를 따름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381조).

현행	개정안
제381조(지하수 취수량 제한 및 이용중지 등) ① (생략)	제381조(지하수 취수량 제한 및 이용중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지하수의 취수량 산정방법 및 이의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u><후단 신설></u>	② ----- ----- -----, 이 경우 도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③ ~ ⑤ (생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주특별법」 제381조는 도지사는 지하수 개발자·이용자의 지하수 취수량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제1항), 지하수의 취수량 산정방법 및 이의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하도록 하며(제2항), 도지사는 지하수의 이용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제3항), 취수량 제한과 일시적 이용중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제4항 및 제5항),⁵⁵⁾

5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81조(지하수 취수량 제한 및 이용중지 등) ① 도지사는 지하수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 개발자·이용자의 지하수 취수량을 제한할 수 있다.

1. 지하수의 실제 이용량이 허가량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경우

지하수개발·이용허가를 받은 자는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에 따라 지하수 취수허가량 및 제한 사유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⁵⁶⁾

개정안은 「제주특별법」이 지하수 취수량 제한시 이의신청에 관하여 도조례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도조례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행정기본법」을 따르도록 하는 조문을 추가함으로써,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지하수 취수 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도조례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보하면

2. 가뭄, 과다한 지하수 취수 등으로 인한 지하수의 고갈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하수의 취수량 산정방법 및 이의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③ 도지사는 지하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 개발자·이용자에게 지하수의 이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379조제4항에 따른 지하수의 공동이용조치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387조에 따른 지하수원수대금을 체납한 자에게 납부 독촉과 행정절차 등의 안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6개월 이상 지하수원수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④ 도지사는 제384조제3항에 따른 지하수 기준수위 관측정의 수위가 도조례로 정하는 기준수위보다 낮아지는 경우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수량 제한 또는 일시적 이용중지와 그에 관련된 조치를 단계적으로 취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수량 제한 또는 이용중지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취수량 제한 또는 이용중지 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56)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16조(지하수 취수량 제한 등) ① 제주특별법 제381조제2항에 따라 제한하는 지하수 취수량은 사업장별 월간 취수량을 기준으로 하며, 계절별 지하수 이용특성·빗물 및 지하수 이용량·수질 검사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취수 허가량은 해당 사업장의 최근 3년 월 평균 지하수 이용량의 100분의 120까지 조정할 수 있다.

② 제주특별법 제381조제1항제1호에서 “지하수의 실제 이용량이 허가량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근 3년 월 최대 지하수 이용량이 취수허가량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2. 최근 3년 월 평균 지하수 이용량이 취수허가량의 100분의 60 미만인 경우

③ 제주특별법 제381조제1항제2호에서 “지하수의 고갈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지하수 과다 이용으로 인하여 해수침투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2. 염소이온농도가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지역에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취수량을 제한하려는 경우 지하수개발·이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취수 허가량 및 제한 사유 등을 미리 통보하여야 하며, 지하수개발·이용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서도 「행정기본법」상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이 「제주특별법」에 따른 이의신청에도 적용됨을 명시적으로 알리는 효과를 의도한 것으로 보인다.⁵⁷⁾

[현행 조례와 행정기본법 상 이의신청 규정 비교]

구분	현행 조례	행정기본법	비고
이의신청 제도 및 신청기한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취수량을 제한하려는 경우 지하수개발·이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취수허가량 및 제한 사유 등을 미리 통보하여야 하며, 지하수개발·이용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u>10일 이내</u> 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행정청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u>30일 이내</u> 에 이의신청할 수 있음.	행정기본법이 유리
결정 및 통지 기한	-	<u>14일 이내</u> 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함. 다만, <u>10일의 범위</u> 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통지해야 함.	도조례에 관련 규정 없음
행정심판, 행정소송 제기 가능	-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도조례에 관련 규정 없음

57) 「행정기본법」 (2025.9.19. 시행예정)

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③ (생략)

④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자는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제2항에 따른 통지기간 내에 결과를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통지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을 말한다)부터 90일 이내에 제1항의 처분(이의신청 결과 처분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처분으로 한다)에 대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⑤ 행정청은 제2항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항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등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하기 전에 이미 신청인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안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다른 법률에서 이의신청과 이에 준하는 절차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 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생략)

다만, 개정안은 다음의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첫째, 개정안은 ‘도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비록 「행정기본법」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을 따르도록 하여 보충적인 효력을 갖고 있긴 하나,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인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법령우위의 원칙의 관점에서 개정안의 문구는 법률보다 조례를 상위규범로 두어 조례의 효력이 법률의 효력보다 우위에 있다는 오해를 가져올 소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추후 수정을 통하여 표현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 보임.⁵⁸⁾

둘째, 개정안에 따라 이의신청 기간이 연장되는 효과가 있는데 이미 취수허가량·제한 사유 등을 통보받은 지하수개발·이용자도 유리해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부칙에 ‘적용례’를 함께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58) 참고로, 기존의 입법례는 ‘법률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항’은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8) 「주민등록법」

개정안은 「주민등록법」이 「행정기본법」의 이의신청 규정과 다르게 규정하고 있음을 명시하기 위하여 조 제목을 ‘주민등록 등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로 변경하고,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주민등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는 「행정기본법」 제36조(이의신청)에 따름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21조).

현행	개정안
제21조(이의신청 등) ① ~ ③ (생략) <u><신설></u>	제21조(주민등록 등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같은 조 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에 따른다.

개정안은 조 제목을 변경(이의신청 등→주민등록 등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하고, 제4항을 신설하여 제1항~제3항 외의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의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에 따르도록 하되,

제2항 단서의 기한 연장에 관한 규정⁵⁹⁾은 적용을 제외하고 있는데

⁵⁹⁾ 「행정기본법」

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생략)

② 행정청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 ⑦ (생략)

이는 현행 「주민등록법」이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정이 지연되는 경우 연장할 수 있다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현행 규정이 국민에게 더 유리함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

[현행 및 개정안의 이의신청 조문 비교(안 제21조)]

구분	현행	개정안	비고
조 제목	이의신청 등	<u>주민등록 등에 대한</u> 이의신청 <u>특례</u>	「행정기본법」의 이의신청과 다른 사항이 있음을 명시
이의신청 제도 및 신청 기한	-제1항-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제20조제5항·제6항 또는 제20조의2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주민등록 또는 등록사항의 정정이 나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의 처분 ⁶⁰⁾ 을 받은 자가 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그 처분일 이나 제20조제7항 또는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거나 공고 ⁶¹⁾ 된 날부터 <u>30일 이내</u> 에 서면으로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	-제2항- (현행과 같음)	현행 유지
결정 및 통지 기한	-제2항- <u>10일 이내</u> 에 심사·결정하여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함.	-제2항- (현행과 같음) ※ <u>현행규정이 국민에게 유리</u>	현행 유지 * 「행정기본법」 - <u>14일 이내</u> 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함. <u>다만,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통지해야 함.</u>
인용 시 조치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결정되면 그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거나 등록사항을 정정 또는 말소해야 함.	(현행과 같음)	현행 유지 * 「행정기본법」에 관련 규정 없음.

구분	현행	개정안	비고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가능 통지	-제3항-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면 결과통지서에 행정심 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 다는 취지를 함께 적어 신청인에 게 알려야 함.	-제3항- (현행과 같음)	현행 유지 * 「행정기본법」 (2025.9.19. 시행예정) -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통지시 행정 심판 또는 행정소 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
「행정 기본법」 적용	<신 설> ※ 「행정기본법」 제36조(이의신청) 중 「주민등록법」 미규정 사항 -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 또는 행정 소송 제기 가능 - 이의신청 결과 통지 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자는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통지기간 내에 결과를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 지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 정소송 제기 가능 -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 통지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 (2025.9.19. 시행예정) -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함.	-제4항-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은 「행정기본법」 제36조(같은 조 제2항 단서는 제외)에 따름.	제1항~제3항의 규정 외에는 「행정기본법」에 따름을 명시 * 「주민등록법」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심 사·결정 기간연장 규 정이 없으므로, 「행 정기본법」의 기간연 장 규정은 준용하지 않음.

※ 현행 및 개정안의 음영표시 : 유사 또는 동일한 내용

60)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① ~ ④ (생략)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의무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정하여진 기간에 신고하
지 아니하면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 공부상의 근거 또는 통장·이장의 확인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거나 등록사항을 정정 또는 말소하여야 한다.

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의무자가 제5항에 따른 확인 결과, 거주사실이 불분명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의무자가 마지막으로 신고한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여 거주불
명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거주불명 등록 후 1년이 지나고 제3항
에 따른 공고를 2회 이상 하여도 거주불명자가 정당한 거주지에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읍
·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할 수 있다.

⑦ · ⑧ (생략)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① (생략)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 공부상의 근거 또는 통장·이장의 확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거주자 또는 재외국민으로의 등록
2. 등록사항의 말소(사망 사실을 확인한 경우 또는 그 밖에 거주불명자의 주민등록을 유지할 필
요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생략)

「주민등록법」 제21조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주민등록 또는 등록사항의 정정이나 말소, 거주불명 등록 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일 또는 통지 받거나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제1항), 이의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10일 이내에 심사·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리고 요구가 정당한 경우 주민등록을 하거나 등록사항을 정정·말소하여야 하며(제2항), 이의신청을 각하하거나 기각하는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제3항).⁶²⁾

개정안은 「주민등록법」이 「행정기본법」과 동일하거나 보다 유리하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규정을 유지하고(제1항부터 제3항까지), 「주민등록법」 제21조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를 따르도록 조문(제4항)을 신설함.

③ (생략)

61)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①~⑥ (생략)

⑦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공부상의 근거 또는 통장·이장의 확인을 받는 방법으로 직권조치를 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의무자에게 알려야 하고, 알릴 수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⑧ (생략)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①~② (생략)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직권조치를 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의무자에게 알려야 하고, 알릴 수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62) 「주민등록법」

제21조(이의신청 등)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제20조제5항·제6항 또는 제20조의2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주민등록 또는 등록사항의 정정이나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의 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그 처분일이나 제20조제7항 또는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거나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심사·결정하여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하며,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결정되면 그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거나 등록사항을 정정 또는 말소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면 제2항에 따른 결과통지서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함께 적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에 따라 현행 「행정기본법」상 ① 이의신청에 따른 제소기간의 연장효과⁶³⁾, ②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 통지시 행정심판·행정소송 고지에 관한 사항(2025.9.19. 시행 예정)⁶⁴⁾, ③ 「행정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⁶⁵⁾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이의신청에도 적용됨을 명시적으로 알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은 「행정기본법」과 중복된 규정을 삭제하여 행정법 체계를 정비하고자 하는 취지이므로, 「행정기본법」과 유사하게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통지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안내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제21조제3항을 추가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이 있는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63) 「행정기본법」

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 ③ (생략)

④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자는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제2항에 따른 통지기간 내에 결과를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통지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을 말한다)부터 90일 이내에 제1항의 처분(이의신청 결과 처분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처분으로 한다)에 대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⑤ (이하 생략)

64) 「행정기본법」 (2025.9.19. 시행예정)

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 ③ (생략)

④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자는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제2항에 따른 통지기간 내에 결과를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통지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을 말한다)부터 90일 이내에 제1항의 처분(이의신청 결과 처분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처분으로 한다)에 대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⑤ 행정청은 제2항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항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등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하기 전에 이미 신청인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안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생략)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생략)

65) 「행정기본법」

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 ⑤ (생략)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생략)

(9)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66)

개정안은 공여구역주변지역등발전종합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의 인허가등 의제 규정과 관련하여,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고, 일부 조문을 재구성 또는 자구수정을 통해 정비하며, 「행정기본법」에 규정된 인허가 의제의 기준, 효과, 사후관리 등 규정을 따름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1조, 제29조).

현행	개정안
제11조(사업의 시행승인 등) ① ~ ⑤ (생략)	제11조(사업의 시행승인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사업승인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시행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⑥ ----- ----- ----- -----.
1. 사업시행자가 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제29조제3항에 따라 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때에는 3년)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1. ----- -----제29조제2항----- ----- -----
2. 3. (생략)	2. 3. (현행과 같음)
⑦ · ⑧ (생략)	⑦ · ⑧ (현행과 같음)
제29조(인·허가등의 의제) ①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시행승인 또는 변경승인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	제29조(인·허가등의 의제) ①----- ----- ----- -----

66) 이하 “「미군공여구역법」”이라 함.

현행	개정안
인가·지정·승인·협의·신고·해제·결정·동의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 중 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 29. (생략) ②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의 승인을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법률에서 규정한 허가 등의 기준에 위반하여 협의에 응하여서는 아니 되고,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 ----- ----- 사업승인권자가 인·허가등의 ----- ----- ----- 대해서는 ----- -----. 1. ~ 29. (현행과 같음) ② 사업승인권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이 모두 충족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의 협의가 끝나지 아니하더라도 그 필요한 협의가 완료될 것을 조건으로 제11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시행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수 있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시급하게 시행할 필요가 있을 것 2.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사업시행을 위한 중요한 사항인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협의가 되었을 것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현행	개정안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시급하게 시행할 필요가 있고,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사업시행을 위한 중요한 사항에 대한 협의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한 협의가	<u>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u> <u>나. 「도시개발법」 제4조에 따른 개발계획의 수립</u> <u>다.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지정</u> <u>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산업입지공급계획의 수립</u> <u>마.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u> <u>바.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u> <u>사. 그 밖에 사업승인권자가 후속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요건</u> <u><삭 제></u>

현행	개정안
<u>끝나지 아니하더라도 그 필요한 협의가 완료될 것을 조건으로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시행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수 있다.</u> <u>④ 제3항에서 “사업시행을 위한 중요한 사항에 대한 협의”란 다음 각 호와 같다.</u> <u>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u> <u>2. 「도시개발법」 제4조에 따른 개발계획의 수립</u> <u>3.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지정</u> <u>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산업입지공급계획의 수립</u> <u>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u> <u>6.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u> <u>7. 그 밖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요건이 협의되어 후속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사업승인권자가 인정한</u>	<u>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다.</u>

현행	개정안
<u>경우</u> ⑤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제2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각각의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시행한다.	③ 제11조에 따른 ----- -----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 -----.

개정안은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조문을 재구성하고, 「행정기본법」과 유사한 내용은 삭제하며, 인허가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현행 및 개정안의 인허가 의제 조문 비교(안 제29조)]

구분	현행	개정안	비고
인허가 의제 제도	-제1항-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시행승인 또는 변경승인이 있는 때에는 제1~29호의 인·허가 등 중 <u>제2항에 따라</u>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u>대하여</u>는 그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봄.	-제1항-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시행승인 또는 변경승인이 있는 때에는 제1~29호의 인·허가 등 중 <u>사업승인권자가 인·허가등</u>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u>대해서는</u> 그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봄.	현행 유지 (자구 수정)
관계기관 사전 협의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의 승인을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함.)	<삭 제> - 「행정기본법」의 유사 규정 적용 「행정기본법」 제24조제3항 - 주된 인허가 행정청은 주된 인허가를 하기 전에 관련 인허가에	「행정기본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현행 규정 삭제

구분	현행	개정안	비고
		관하여 미리 관련 인허가 행정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협의 시 해당 법령 준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법률에서 규정한 허가 등의 기준에 위반하여 협의에 응하여서는 안됨.)	<삭 제> － 「행정기본법」의 유사 규정 적용 「행정기본법」 제24조제5항 － 제3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해당 법령을 위반하여 협의에 응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련 인허가에 필요한 심의, 의견 청취 등 절차에 관하여는 법률에 인허가의제 시에도 해당 절차를 거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거친다.	「행정기본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현행 규정 삭제
관계기관 의견제출 기한 및 기한 내 미제출시 협의간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봄.)	<삭 제> － 「행정기본법」의 유사 규정 적용 「행정기본법」 제24조제4항 －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제3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제5항 단서에 따른 절차에 걸리는 기간은 제외한다)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단에서 정한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는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한 기간을 말한다) 내에 협의 여부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된 것으로 본다.	「행정기본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현행 규정 삭제
	-제3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시급하게 시행할 필요가 있고,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사업 시행을 위한 중요한 사항에 대한 협의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모	-제2항- 사업승인권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이 모두 충족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에 <u>필요한 모든 사항의 협의가 끝나지 아니 하더라도 그 필요한 협의가 완료 될 것을 조건으로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시행승인</u>	현행 유지 (현행 제3항·제4항을 재구성) * 「행정기본법」 -유사규정 없음.

구분	현행	개정안	비고
	든 사항에 대한 협의가 끝나지 아니하더라도 그 필요한 협의가 완료될 것을 조건으로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시행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수 있음.	또는 변경승인을 할 수 있음.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시급하게 시행할 필요가 있을 것 2.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사업 시행을 위한 중요한 사항인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협의가 되었을 것 가. ~ 사. (생략)	
	-제4항- 제3항에서 “사업시행을 위한 중요한 사항에 대한 협의”란 다음 각 호와 같음. 1. ~ 7. (생략)	-제4항-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름.	제1항~제3항의 규정 외에는 「행정기본법」에 따름을 명시
「행정기본법」 적용	<u><신 설></u> ※ 「행정기본법」 제24조~제26조(인허가의의제의 기준, 효과, 사후관리 등) 중 「미군공여구역법」에 미 규정된 주요 사항 - 주된 인허가 신청 시 관련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 함께 제출 -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청은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해야 하며, 기간 내에 의견 미제출 시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 -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청은 해당 법률을 위반하여 협의에 응해서는 안됨. -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관련 인허가를 직접 한 것으로 보아 관계 법률에 따른 관리·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법률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의의제의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제5항-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제2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각각의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시행한다.	-제3항으로 이동- 제11조에 따른 사업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각각의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시행한다.	현행 유지 (조문순서 변경 및 자구수정)

※ 현행 및 개정안의 음영표시 : 유사 또는 동일한 내용

「미군공여구역법」 제29조는 공여구역주변지역등발전종합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사업 시행(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고(제1항), 사업 승인 시 관계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도록 하면서 법령 우위의 원칙, 의견 제출 기한, 의견 미제출시 협의 간주 등을 규정하며(제2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에 따른 공익사업에 대하여는 협의 완료를 조건으로 사업 시행(변경)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고(제3항 및 제4항), 승인받은 사업을 개별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시행하도록 규정함(제5항).⁶⁷⁾

개정안은 「미군공여구역법」에서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내용을

67)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9조(인·허가등의 의제) ①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시행승인 또는 변경승인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지정·승인·협의·신고·해제·결정·동의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 중 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 29. (생략)

②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의 승인을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법률에서 규정한 허가 등의 기준에 위반하여 협의에 응하여서는 아니 되고,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이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시급하게 시행할 필요가 있고,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사업시행을 위한 중요한 사항에 대한 협이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한 협이가 끝나지 아니하더라도 그 필요한 협이가 완료될 것을 조건으로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시행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서 “사업시행을 위한 중요한 사항에 대한 협의”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2. 「도시개발법」 제4조에 따른 개발계획의 수립
3.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지정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산업입지공급계획의 수립
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
6.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7. 그 밖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요건이 협의되어 후속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사업승인권자가 인정한 경우

⑤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제2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각각의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시행한다.

규정하고 있는 제2항을 삭제하고,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인허가의제에 관한 규정을 따르도록 하여,

「행정기본법」의 인허가 의제 관련 조문이 「미군공여구역법」에도 적용됨을 명확히 함으로써 법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임.

(10)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68)

개정안은 지방소도읍 종합육성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의 인허가 등 의제 규정과 관련하여,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고, 일부 조문을 「행정기본법」과 유사하게 정비하며, 「행정기본법」에 규정된 인허가 의제의 기준, 효과, 사후관리 등 규정을 따름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9조).

현행	개정안
제9조(인·허가등의 의제 등) ① 사업시행자가 제8조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승인·해제·결정·신고수리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인·허가등이 고시되거나 공고된 것으로 본다.	제9조(인·허가등의 의제 등) ① -- ----- ----- ----- ----- 한다)에 관하여 관할 시장·군수가 인·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 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허 가등-----.
1. ~ 26. (생략)	1. ~ 26. (현행과 같음)
② 관할 시장·군수는 제8조에 따라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할 때 그 사업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② ----- ----- ----- ----- -----

68) 이하 “「소도읍법」”이라 함.

현행	개정안
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요청을 받은 관할부대장등을 포함한다)과 <u>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u> ③ 제2항에 따라 사전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u>사업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침해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협의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u>	----- ----- ----- <u>미리</u> -----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다.

개정안은 「행정기본법」과 유사한 내용을 삭제하고, 인·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따르도록 하고 있음.

[현행 및 개정안의 인허가 의제 조문 비교(안 제9조)]

구분	현행	개정안	비고
인허가 의제 제도	-제1항- 사업시행자가 제8조에 따라 개발 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26호의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인·허가등이 고시되거나 공고된 것으로 봄.	-제1항- 사업시행자가 제8조에 따라 개발 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26호의 인·허가등에 관하여 <u>관할 시장·군수가 인·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u> 해당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인·허가등이 고시되거나 공고된 것으로 봄.	「행정기본법」과 유사하게 조문 정비 - 협의가 된 사항에 대해서는 주된 인허가를 받았을 때 관련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봄.
관계기관 사전 협의	-제2항- 시장·군수는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할 때 그 사업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인·허가등 의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u>사전에</u> 협의해야 함.	-제2항- 시장·군수는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할 때 그 사업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인·허가등 의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u>미리</u> 협의해야 함.	「행정기본법」과 유사하게 조문 정비 - 주된 인허가 행정청은 주된 인허가를 하기 전에 미리 관련 인허가 행정청과 협의해야 함.
관계기관 의견제출 기한 및 기한 내 미제출시 협의간주	-제3항- (사전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사업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침해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협의에 응해야 함.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봄.)	<삭 제> - 「행정기본법」의 유사 규정 적용 「행정기본법」 제24조제4항 -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제3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제5항 단서에 따른 절차에 걸리는 기간은 제외한다)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단에서 정한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는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한 기간을 말한다) 내에 협의 여부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된 것으로 본다.	「행정기본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현행 규정 삭제
「행정 기본법」 적용	(제3항 개정)	-제3항-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름.	「소도읍법」에 규정되지 않은 인허가 관련 사항은 「행정기본법」에 따름을 명시
	※ 「행정기본법」 제24조~제26조(인허가의제의 기준, 효과, 사후관리 등) 중 「소도읍법」에 미규정된 주요 사항 - 주된 인허가 신청 시 관련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 함께 제출 -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청은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해야 하며, 기간 내에 의견 미제출 시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 -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청은 해당 법률을 위반하여 협의에 응해서는 안됨. -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관련 인허가를 직접 한 것으로 보아 관계 법률에 따른 관리·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주된 인허가 후 변경 시에도 준용 - 법률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의제의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소도읍법」 제9조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받은 경우 인·허가등을 받거나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보도록 하고(제1항), 개발사업 시행승인시 사업에 인·허가등이 의제되는 사항이 포함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며(제2항),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의 의무와 의견 미제출시 협의 간주를 규정하고 있음(제3항).⁶⁹⁾

개정안은 「소도읍법」에서 「행정기본법」과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제3항을 삭제하고,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인허가의제에 관한 규정을 따르도록 하여,

「행정기본법」의 인허가 의제 관련 조문이 「소도읍법」에도 적용됨을 명확히 함으로써 법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임.

69)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제9조(인·허가등의 의제 등) ① 사업시행자가 제8조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승인·해제·결정·신고수리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인·허가등이 고시되거나 공고된 것으로 본다.

1. ~ 26. (생략)

② 관할 시장·군수는 제8조에 따라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할 때 그 사업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요청을 받은 관할부대장등을 포함한다)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전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사업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침해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협의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이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11) 「행정사법」

가. 업무신고 수리 거부 이의신청 관련 이의신청 조문 정비

개정안은 「행정사법」에 「행정기본법」과 다른 내용이 있음을 명시하기 위하여 이의신청 특례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1조, 제11조의2 신설, 제25조의13).

현행	개정안
제11조(업무신고의 수리 거부) ① ·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라 행정사업무신고의 수리가 거부된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행정사업무신고의 수리 거부에 대한 불복(不服)의 이유를 밝혀 시장등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시장등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제11조(업무신고의 수리 거부) ① · ②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삭제> 제11조의2(업무신고 수리 거부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①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업무신고 수리 거부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수

현행	개정안
제25조의13(준용규정) ① 행정사법 인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11조제2항 부터 제5항까지, 제12조제2항, 제 13조, 제14조제3항부터 제6항까 지, 제16조부터 제21조까지 및 제 22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생략)	리 거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 월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이의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 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결과 통 지 기간은 연장할 수 없다. ③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이의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신 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25조의13(준용규정) ① ----- ----- ----- 제11조제2항, 제11조의2----- ----- ----- ----- -----. 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은 「행정사법」이 행정사업무신고 수리 거부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행정기본법」과 다르게 규정하고 있음을 명시하기 위하여 이의신청 특례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행정기본법」과 유사하게 자구를 수정하여 조문을 재구성하고 있음.

[현행 및 개정안의 이의신청 조문 비교]

구분	현행	개정안	비고
조 제목	-제11조- 업무신고의 수리 거부	-제11조의2- <u>업무신고 수리 거부에 대한</u> 이의신청 <u>특례</u>	「행정기본법」의 이의신청과 다른 사항이 있음을 명시
이의신청 제도 및 신청기한	-제11조제3항- 행정사업무신고의 수리가 거부된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 월 이내에 행정사업무신고의 수리 거부에 대한 불복(不服)의 이유를 밝혀 시장등에게 이의신청 할 수 있음.	-제11조의2제1항- 행정사업무신고 수리 거부에 이의 가 있는 당사자는 수리 거부 통지 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행정 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장등에게 이의신청 할 수 있음. ※현행규정이 국민에게 유리	「행정기본법」과 유사하게 조문 정비 * 「행정기본법」 - 행정청의 처분에 이 의가 있는 당사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할 수 있음.
하위법령 위임	-제11조제3항- 이의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u>행정안 전부령으로 정함</u>		
결정 및 통지 기한	-행정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u>처리기간 30일</u>	-제11조의2제2항-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u>신청인 에게 통지</u>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결과 통지 기간은 연장할 수 없다.	「행정기본법」과 유사하게 조문 신설 * 「행정기본법」 -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부득 이한 경우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음.
인용 시 조치	-제11조제4항-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신고확인증을 발급해야 함.	-제11조의2제3항- (현행과 같음)	현행 유지 * 「행정기본법」에관 련 규정 없음.

※ 현행 및 개정안의 음영표시 : 유사 또는 동일한 내용

「행정사법」 제11조는 행정사업무신고 기준을 갖추지 않은 경우 수리를 거부할 수 있되 수리 거부시 수리 거부 사실과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제1항), 업무신고 뒤 3개월 내에 행정사업무신고확인증 발급을 하지 않거나 수리 거부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신고 수리를 간주하도록 하며(제2항), 행정사업무신고 수리가 거부된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제3항), 이의신청이 이유있는 경우 시장등에게 신고확인증을 발급할 의무를 부여하며(제4항), 이의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제5항).⁷⁰⁾

개정안은 「행정사법」이 「행정기본법」과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규정을 유지하고, ‘이의신청 특례’ 조문을 신설하여 「행정사법」이 이의신청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행정기본법」과 달리 규정하고 있음을 명확히 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개정안은 행정사업무신고 수리 거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 「행정기본법」을 준용 또는 적용한다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데,

이와 관련하여 법제처는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가 우선 적용되므로 「행정기본법」 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준용한다는 문구를

70) 「행정사법」

제11조(업무신고의 수리 거부) ① 시장등은 행정사업무신고를 하려는 사람이 행정사업무신고 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행정사업무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행정사업무신고의 수리 거부 사실 및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시장등이 업무신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제12조에 따른 행정사업무신고확인증(이하 “신고확인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사업무신고의 수리 거부 통지를 하지 아니하면 3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행정사업무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행정사업무신고의 수리가 거부된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행정사업무신고의 수리 거부에 대한 불복(不服)의 이유를 밝혀 시장등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시장등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두는 경우 법 해석상 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함.

나. 업무정지의 제척기간 관련 조문 정비

개정안은 「행정사법」에 「행정기본법」과 다른 내용이 있음을 명시하기 위하여 업무 정지의 제척기간 특례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32조, 제3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2조(업무의 정지) ①·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신설>	제32조(업무의 정지) ①·② (현행과 같음) <삭제> 제32조의2(행정제재처분의 제척기간 특례) 제25조의10에 따른 설립인가의 취소 및 제32조에 따른 업무정지에 관하여 「행정기본법」 제23조를 적용할 때 같은 법 제23조제1항 중 “5년”은 “5년(업무정지의 경우에는 3년)”으로 한다. 부칙 제3조(「행정사법」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행정사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가 종료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32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안은 「행정사법」이 행정사 및 행정사법인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의 제척기간에 대하여 「행정기본법」과 다르게 규정하고 있음을 명시하기 위하여 행정제재처분의 제척기간 특례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관련 조문을 재구성하고 있음.

제척기간이란 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을 위하여 일정한 권리에 관하여 법률이 정하고 있는 존속기간으로,⁷¹⁾ 「행정기본법」 제23조는 일정 기간 내에 행정청이 제재처분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해당 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소멸되도록 제재처분의 제척기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⁷²⁾

이 때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제재처분은 ‘인허가의 정지·취소·철회, 등록 말소, 영업소 폐쇄와 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로서, 「행정사법」상 행정사법인의 설립인가 취소와 행정사 및 행정사법인의 업무정지는 제척기간의 적용되는 제재처분에 해당하며, 현행법은 행정사 및 행정사법인의 업무정지에 관하여 3년의 제척기간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행정사법」에도 「행정기본법」에 따른 제재처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나, 업무정지의 경우에는 「행정기본법」과 달리 규정하고 있음을 명확히 알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71) 국회사무처, 「법제이론과 실제」, 2024.

72) 「행정기본법」

제23조(제재처분의 제척기간) ① 행정청은 **법령등의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재처분(인허가의 정지·취소·철회, 등록 말소, 영업소 폐쇄와 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할 수 없다.

② (이하 생략)

또한, 제척기간 계산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현행법은 업무정지의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로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에 따르면 행정사법인의 설립인가 취소와 업무정지의 제척기간이 모두 ‘법령등의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로 법문 표현이 동일해지는 효과가 있음.⁷³⁾

문 의 처
02)6788-5350

73) 제척기간의 기산점을 ‘사유가 발생한 날’로 하는 경우, ‘계속되는 위반행위’의 기산점이 논란이 될 수 있겠으나, 판례는 ‘위반행위가 종료한 날’과 동일하게 판단하는 것으로 보임.

- 대법원 2004두2776(2006.01.13) :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과징금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 하급심 : 대구고등법원 2003누347(2004.01.30.) : 의무위반이 있게 되면 즉시 진행되는 것으로 볼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명의신탁등기의 경우에는 그같은 등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한은 의무위반이 계속되는 것이므로, 명의신탁으로 인한 과징금의 경우에는 그 같은 의무위반 상태가 계속되는 한은 언제든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같은 의무위반 상태가 종료된 때, 즉 명의신탁의 등기가 해소된 때 비로소 부과권의 제척기간이 진행된다고 볼 이 옳다.